

수원지방법원 2018. 6. 22 선고 2017가단35577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8. 6. 8.

판결 선고 2018. 6. 2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용인시 기흥구 C 및 D 각 토지 지상에 적재된 자동차타이어, 컴프레샤, 압축기, 각종 고철, 플라스틱, 자동차 부속품 및 위 각 토지 지상 사무실에 적재된 에어컨, 텔레비전, 냉장고, 각종 사무용품 등을 각 수거하고,
나. 위 각 토지를 인도하고,
다. 11,841,000원 및 2017. 11. 1.부터 위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66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송창현

별지